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21455 |
|----------|-------|

발의연월일 : 2026. 9. 18.

발 의 자 : 윤영석 · 김종양 · 박대출  
유용원 · 김대식 · 김태호  
박성민 · 박성훈 · 곽규택  
정동만 · 박덕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데 따른 부담 등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신속하게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또한 현행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형사재판을 통하여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확정되더라도 민사상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가해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성폭력범죄가 있는 날부터 20년으로 연장하고,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그 확정일부터 5년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소멸시효 완성만을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변호사보수를 피해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중전의 소멸시효 완성 사건 및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권리구제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의 실질적인 민사상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신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폭력 행위가 있는 날부터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그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1조의3(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 ① 제21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서 해당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기각되더라도 피해자가 그 청구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1조

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자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청구가 소멸시효의 완성만을 이유로 기각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따라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상대방의 변호사보수를 피해자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로서 그 확정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조(소멸시효를 이유로 확정된 판결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전

에 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피해자가 그 확정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성폭력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종전의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해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5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으로 종전 판결이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종전 판결에 기초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이미 소송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에게 변경된 소송비용 부담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lt;신   설&gt;</u> | <u>제21조의2(소멸시효에 관한 특례)</u><br><u>①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u><br><u>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손해배</u><br><u>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u><br><u>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u><br><u>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u><br><u>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u><br><u>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u><br><u>그 성폭력 행위가 있는 날부터</u><br><u>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u><br><u>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u><br><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u><br><u>성폭력범죄에 관하여 가해자에</u><br><u>대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u><br><u>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u><br><u>따른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와</u><br><u>관계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u><br><u>대리인은 그 유죄판결 또는 약</u><br><u>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5년</u><br><u>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u><br><u>할 수 있다.</u> |
| <u>&lt;신   설&gt;</u> | <u>제21조의3(소송비용 부담에 관한</u><br><u>특례) ① 제21조의2에 따른 손</u>                                                                                                                                                                                                                                                                                                                                                                                                                                                                                                            |

해배상청구의 소에서 해당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가해자에 대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기각되더라도 피해자가 그 청구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01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자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청구가 소멸시효의 완성만을 이유로 기각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따라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상대방의 변호사보수를 피해자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한다.